

2006. 9.

條例案件審查報告書

-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產業建設委員會

조례안건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6. 8. 25	2006. 8. 25	2006. 9. 8	2006. 9. 8	지역개발과장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도로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하고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확보하고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나.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자격의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까지 신고제였던 옥외광고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3조)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근거 (안 제4조)

나.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안 제32조)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시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금액 결정 (안 별표5)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지난해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지금까지는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반시설 수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향후에는 기반시설 비용중 일정률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 부담금의 부과대상 건축물은 건축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이나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와 같이 부과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초·중·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

치근거를 마련하고 부과·징수하게 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판단됨

- 다만, 벼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등 농업생산시설이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고 대형 건축물 신축이나 신규분양 아파트 등이 부담금 부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인상과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하겠음

나.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2005년도 제103회 충주시의회 2차정례회의 기간중에 전부개정되어 옥외광고물의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금번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
- 주요 개정내용은 서면 신고만 하면 되던 옥외광고업이 규정된 기술자격인을 고용하고 일정면적의 사무실면적을 확보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꾸고
- 또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내용중 휴·폐업과 업무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시행령에서 주어진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함

-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질의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예상되는 세입은 어느정도인가?

- 답변 : 년 150건, 5억정도 됨

- ▶ 질의 :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조례를 수정할수 있는지?

- 답변 :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사항 이므로 안되며, 본 조례는 부담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조례임

나.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옥외광고업 제작업 시설기준 연면적 9.9㎡은 너무 좁은 것이 아닌지?

- 답변 : 3평의 기준은 최소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임

- ▶ 질의 : 길을 막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음 하
한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 답변 : 도로변에서 광고물 제작업을 하는 것은 행정계도로
해야 할 사항임

6. 심사결과

- 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 나.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